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우수(수범)사례집 홍보계획		
<p><input type="checkbox"/> 발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최근 3년간 구에서 추진한 우수시책(사례) ○ 발간부수 : 500부 ○ 배 부 : 전부서, 통장, 부산시, 구·군 <p><input type="checkbox"/> 홍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홍보토록하고 ○ 관내 전 통에 배부하여 주민회합 및 통장택에 보관 통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음 ○ 또한 부산시 및 구·군에 배부하여 우리구의 우수시책을 널리 알릴 계획임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규제업무의 활성화는 어떻게 하나		

-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장소
 - 기획감사실(4층)
 - 인터넷(사하구청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 규제개혁업무의 활성화추진
 - 기획감사실점검 : 3회(12건 지적 : 주의4, 훈계1, 시정7)
 - 과별자체점검 : 3회실시
 - 행자부 및 시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 점검의 지적사례별로 각 과별 점검하고 유사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
 - 행정규제업무의 2000년 추진내역
 - 행정규제업무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를 발굴완화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새로이 규제를 신설할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 '98년부터 2000년까지 규제업무를 현재까지 각 과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사무 200건을 발굴하여 폐지 103건, 완화 42건, 존치 55건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42건의 완화, 102건을 폐지하였고 2001년 12월 의회 의결을 거쳐 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2항을 폐지함으로써 100% 마무리작업을 할 것입니다.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주부인터넷교육 수강생 현황		

○주부인터넷교육 학원별 수강생 현황

11.28현재

학 원 명	9월	10월	11월	소계지
종로정보처리 206-9437	34	17	5	하단2동
배정컴퓨터 263-1855	56	25	13	다대1동
당리컴퓨터 292-5055	58	47	58	당리동
대건컴퓨터 207-9528	36	12	22	감천1동
사하드림 206-4965	45	61	75	괴정4동
다대컴퓨터 263-2564	32	43	47	다대2동
하남컴퓨터 201-0191	50	22	47	신평2동
동아컴퓨터 206-8897	55	44	55	하단1동
새동아정보처리 294-2001	.	26	16	하단1동
킹컴퓨터 262-0525	.	44	49	다대2동
계	366	341	387	1,094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 상 은	소관 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소송승소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내역		

○ 승소사건의 소송비용등의 내역 (2000~2001년)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대 상 자	소 송 비 용		회 수 지 시		
				결정일	결정액	근 거	일 자	담당부서
1	99가소 123177	구 상 금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2000. 3.8	850,000	61000- 516	2000. 3.13	건설과
2	99구5115 99구6187	지방세부과 처분취소	한국수자원공사	2000. 4.11	4,116,680	61000- 785	2000. 4.20	세무과
3	98구7688	사업소세부 과처분취소	남부공영	2000. 4.11	328,760	61000- 785	2000. 4.20	"
4	98구7671	"	(주)우성	2000. 4.11	861,170	61000- 785	2000. 4.20	"
5	2001가단 41598호	소유권이전 등기	한일화학	2000. 12.7	31,740	61000- 736	2001. 4.9	건설과
6	2001가단 59544호	"	이영자	2001. 2.21	66,035	61000- 736	2001. 4.9	"
7	2001가단 42034호	소유권이전 등기	백선전	2000. 12.7	54,401	61000- 736	2001. 4.9	건설과
8	2000가소 170933호	손해배상	김상묵	2000. 12.7	31,740	61000- 736	2001. 4.10	총무과
9	2000가합 7397호	비용상환	김상묵	2001. 2.21	3,181,980	61000- 736	2001. 4.10	"
10	99구2307 2000누1232 호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신세계상호신 용 금고	2001. 8.31	3,323,860	61000- 2247	2001. 11.14	세무과
11	99가합107000 2000나4142 2000다52462	손해배상	광신석유	2001. 11.9	10,664,080	61000- 2247	2001. 11.14	허가민원과

○ 회수결과 : 각 해당부서로 회수토록 지시하였으며 회수 및 미회수 사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승소사례금이 동일건에 대해 이중지급된 사유		

< 당 초 >

사건번호 및 건명	승소사례금	수령번호사	지급일자	비고
99가합17336 사해행위취소 원고 : (주)우성	3,300,000	박 옥 봉	2000. 1. 31	
99가합17336 사해행위취소 원고 : (주)우성	3,300,000	박 옥 봉	2000. 4. 6	

< 수 정 >

사건번호 및 건명	승소사례금	수령번호사	지급일자	비고
99가합17336 사해행위취소 원고 :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성회	3,300,000	박 옥 봉	2000. 1. 31	
99가합10700 손해배상 광신석유(주)	3,300,000	박 옥 봉	2000. 4. 6	

-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의 사건번호 및 건명이 동일한 것은 문서작성중 잘못된 것임을 밝힙니다.
-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오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상은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액처분하여 패소한 이유는?		
<p>○ 사건명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액통지 처분취소 결정취소</p> <p>○ 원고 : 강릉 유씨 문중</p> <p>○ 부과 및 감액 경위</p> <p>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지적과)</p> <p>② '99. 6. 29 피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취소요청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감액통지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통보로 감액처분 (붙임 I, II, III)</p> <p>③ 건설교통부에서 감액처분 취소하고 환급하라는 시정지시 (붙임 IV)</p> <p>④ 2000. 4. 7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감액처분을 취소함 (붙임 V)</p> <p>⑤ 2000. 5. 18 원고 소송제기</p> <p>○ 패소사유 : 이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며 부과, 취소등은 위와 같이 되었으며 당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항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제기한 사건은 대부분 처분청 패소로 감액 및 환급되었음.</p>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시 정 조 치 권 고

문 의 받 고 처 : 이 살 07000-402

주 소 :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형 장 지 권 과 장

사 건 : 39고충4979 초파소우부달금부과취소

신 청 인 성 명 : 강릉우재림기공호순등중회 주 소 : 부 산 사 하 구 형 장 1동 373-1
 대표자 우 상 신

피신청인 :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형 장

불 임 의 결 서 정 본 1부

1. 위 고충단원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권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외 의하도 등 의결서의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하도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위 권고를 통보받으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권고를 통보받으신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권고와 같이 시정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통보를 받으신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 위원회는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위원회는 위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우리 위원회의 운영상황은 위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또한 공표됩니다.

1999. 6. 29.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문 의 할 곳 : (02) 313-0114 (교) 555 FAX : (02)313-3018 담당 조사관 : 전영선

선	39고충4979	1999. 7. 02	(주) (인)	원부대주필
처리과				

의 결

제 목 99년도 4분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

발 의 자 강동구청장사무부속농업증회
부산 사하구 괴정1동 979-1
괴정강 유 상 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신익수·정해수·성인덕·김두철·장경오

- 주 문 1. 피신청인은 1997. 12. 1. 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수시분(1997. 3. 2. ~ 1997. 6. 1.) 초과소유부담금 13,947,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 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그리고 피신청인이 1997. 8.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정기분(1996. 6. 2. ~ 1997. 6. 1.) 초과소유부담금 5,777,400원 부과처분과 1998. 8. 17. 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수시분(1997. 6. 2. ~ 1997. 12. 3.) 초과소유부담금 2,926,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


의 구 별 지 의 결 같다.

1999. 6. 22.

의 원 길 기 옥

위 원 신 대 군

위 원 장 준 철

원본대조필 

홍길표

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

문 호 번호 1999-07000-1921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사 유 99이의7525 초·미·중·고·특수교육지원청의 설립권한에 관한
 이의
 간 결 안 이의신청결정안 추상식
 피신청인 이의신청결정안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결 과 의결서 첨부

1. 우리 위원회가 1999. 6. 22. 고지한 99교청4979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과 피청구인의 의견서 기재와 같이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민원사무처 리의관할권별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피청구인의 권를 제35조제1항의 규정외 의하여 권고권 내지 통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권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통보권 내지 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위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통보권 내지 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위 법률 제24조의 의하여 매년 2 통보외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 결		1921	제1차 (제1차)	76
접수일시	1999. 7. 19	1921		
처리과			1999.	3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원본대조필

건 설 교 통 부

우편번호 100-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1로1가 전화 504-9123 전승 503-7397 인터넷 www.mcc.go.kr
트관번호 58360 과장 최정호 사무원 김동환 담당관 권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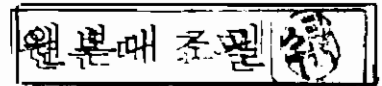
등록번호	트관58000-199	선발	과장	지
시행일자	2000.2.31	접	일자	2000.2.10
등록일부	공개	시간		결
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스	번호	416
참조		처	리	과
		달	당	차
		실	사	자
				실
				사
				일

제 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업무 시정지시

1. 트관58360-308(99.5.6) 및 대구 지적 12130-196(2000.1.25)의 관련사항입니다.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 졌더라도 종전 판례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직권취소(감액결정) 등의 방법으로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트관58360-308, '99. 5. 6)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특히, 귀청에서 감액결정(16,334,650원)한 강릉유씨 문중 과오납금을 비롯하여 일부 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취소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다음 내용의 업무처리지침(트관58000-81, 2000.1.15)을 재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504-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17-16 / ☎220-4753 / FAX220-4756
 지전과 과장 : 성인덕 담당 : 김두찬

문서번호 지적58363- 116	보존기간 5년	구 청 장
시행일자 2000. 4. 7 (년)	공개여부 공개	
경 우 [제 1 안]	부구청장	김두찬
발 음 내부결재	국 장 전결	
참 조	과 장	
	담 당 신원	★ 지안자 박영숙 협조
	실사자 김두찬	심사일 2000. 4. 7

제 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액처분의 취소 결정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시정권 고에 의거 '99.9.17일 지적58363-2701호트 감액결정 처분한 강릉유씨덕기 등후손문중회의 '97년도 수시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334,650원에 대한 감액결정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세입징수관인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결의 처분이 결여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그 효력이 없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감액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의무자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결과를 통지코자 합니다.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액처분 취소 내역

구 분	날 기	부과기간	감 액 취 소 내 역			비 고
			계	본 세	가 산 금	
감 액	'98.1.31	'92.3.2 ~ '95.6.1	16,334,650	13,947,750	2,386,900	'99.9.17 감액
감액처분 취 소			16,334,650	13,947,750	2,386,900	

원본대조필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질문위원	이용조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소송사건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지급 및 승소공무원 포상내역(7건)		

-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9조
- 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승소사례금 지급 및 승소포상금 지급내역 : 7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	원고	승소사례금	승소포상금	비고
99가단21208 부당이득금청구	주한준외 2	1,318,900	0	
99가합17336 사해행위취소	(재)기독교 대한 하나님성회	3,300,000	0	
99가합10700 손해배상	광신석유(주)	3,300,000	100,000	
2000가단42034 소유권이전등기	백선전	276,500	0	
99가단54918 손해배상	김양호외 3	1,827,100	0	2심계류중
2000가소327517 손해배상	김상묵	440,000	0	
2001가소189439 손해배상	김상묵	275,000	0	

※ 승소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변호사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공무원 승소포상금은 조례에 의해 지급하나 승소사건 모두에 대해 지급하기는 예산이 적으므로 승소건의 20~30%는 지급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1988. 5. 1 조례 제6호)

개정 (1995. 6. 15. 조례 제332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촉)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5. 6. 15>

제 3 조(직무) ①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할 수 없다.

제 4 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 5 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1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기획관리(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②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관련부서에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0. 10. 20 규1348>

③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9조 (소송비용 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회계별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4. 4. 18>

②승소사례금을 각 심급별로 기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50%이상 승소에 한하여)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자치구·군과 공동소송인 경우 착수금은 각 1/2씩 지급하고 사례금은 최종 피고 당사자가 지급한다.

④소진행증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소집수기관에서 착수금을 지급하고 사례금은 최종 변경기관에서 지급한다.

⑤시를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급별로 매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5. 1. 12>

제20조 (타기관의 통보)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다음 구분에 의한 소송진행상황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1. 피소시 : 행정소송접수통보서에 소장사본 첨부 통보
2. 판결시 : 행정소송결과통보서에 판결문사본 첨부 통보
3. 상고시 : 행정소송진행상황통보서에 상고장·상고이유서 첨부 통보
4. 판결확정시 : 행정소송결과통보서에 판결문사본 첨부 통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부산시소송사무위임규정(부산시훈령 제459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 부산광역시사하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1988. 5. 1 조례 제7호)

개정 (1989. 3. 21 조례 제104호)
(1990. 11. 6 조례 제1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 또는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제3편 기획관리(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별표] <본표개정 94. 2. 21 규칙 2790>

소송비용등의 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내 용(소송물 가액)	기 준 액	
소송별		착수금	사례금
행정 및 사소송	1. 신청사건	70,000원	없 음
	2. 각심급의 본안사건		
	○소송물가액 500만원미만	250,000원	사례금은 지급한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400,000원	착수금에 송소비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	600,000원	율(50%이상 승
	○2,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1,200,000원	소에 한하여)을
기 타 소 송 비 용	○5,000만원이상 1억원이상	2,000,000원	같은 금액
	○1억원이상	3,000,000원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경우에는 20,000원 따로 지급함)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부산광역시여비조례"중 3급공무원 해당액		
	6. 기타비용 : 실액		

1. 환송심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급함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001.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자료 (16포인트, 진하게)

질문위원	최 선 용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내용	민원접수처리결과 회시공문 사본 제출		
<p>답변내용 기재란</p> <p>○ 붙임 회시공문사본 참조</p>			



부산광역시사하구

우604-701/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전화(051)220-4055/FAX220-4019

기획감사실 . 실장 윤여철 담당 김창근 담당자 정상연

문서번호 기감 16800 - 167

시행일자 2001. 1. 26. (년)

경유

발음 부산시북구 구포2동1097-10

참조 광진석유주식회사 최찰

제 목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

귀하께서 시 감사관에 제출한 진정서가 시 건축주택과를 거쳐 우리구로 이첩되어, 관련업체에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나 우리실에서 할수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극조치토록 하고 아울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 하 구 청 장

[제 2 안]

발음 : 받는곳 참조

제목 : 민원사항 처리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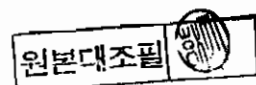
1. 시 건주58550- 136(2001.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구평동 산37번지상의 위험시설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한보철강내 위험시설물 및 위험소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 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통보하오니 부서별 해당사항(진정서참조)을 ~~조사하여~~ ^{한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정 사항 발생하지}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사항 1부. 끝

사 하 구 청 장

받는곳 :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우604-701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7-16 / ☎(051)220- 4052 FAX 220-4019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담당 김창근 담당자 정상연

문서번호 기감 16800 - 336

시행일자 2001. 2. 16 (년)

경유

받음 부산시.북구.구포2동

참조 1097-10번지 광신석유(주)

최 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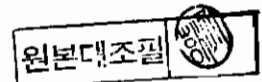
제목 방문 민원에 대한 회신

1. 기감16800-167(2001. 1. 26)호로 회시한바 있으나 귀하께서 우리 구를 방문(2001. 2. 9)하여 한보철강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 한 내용을 문서로 받고 싶다는 구두민원사항에 대해 불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업무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부서별 확인 및 관리실태 1부. 끝.

사 하 구 청 장



부서별 확인 및 관리실태

항 목	점검 내용 및 관리 실태	관련 부서
집진기시설 등대기배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관리상태 : 오염물질 누출등 특이 사항 발견치 못함 - 한보제강소 자체 주기적점검 및보수로 관리상태 양호함 - 오염물질 배출상태 : 육안관찰 이상없음 ▷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의뢰(1회/반기 이상) :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사항등 관련자료 점검결과 :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환경청소과.환경지도계. 조신래 T220-4392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보철강내 위험시설물 관련 해당사항없음 	허가만원과. 건축계 이창현 T220 - 4594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년1회) : 2000. 7. 31 ▷ 적합(한국가스안전공사) - 자율검사(년1회) : 2000. 12. 27 ▷ 적합(")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조의뢰 (지경57253-613 . 2001. 2. 13호) 	지역경제과.상공계 문수창 T220 - 4485
전기로 및 집진시설	이 시설만 별도로 점검하는 기관은 없다고 하며 참고로 소방관련 시설은 소방서에서 월1회이상 점검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안전시설에 대해 년1회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한보측에서 이야기. 함	(주)한보부산제강소 공무팀장 문영재 T260-2370

원본대조필